제417회국회(임시회)
제2차 국방위원회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의 가사휴직사유 확대 등>
▣ 유용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0717호)
▣ 정부 제출(의안번호 제2201698호)

2024. 8.

국 방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오명호

목 차

Ⅰ. 제안경위 및 제출경위 ····· 1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2

1. 유용원의원 대표발의안 ····· 2

2. 정부 제출안 ····· 3

Ⅲ. 검토의견 ····· 4

1. 개요 ····· 4

2. 가사휴직의 사유 확대 및 기간 제한 ····· 5

3. 군인의 성 비위사건 징계시효 연장(3년→10년) ····· 10

4. 명예전역수당 환수금 및 군 가산복무 지원금 반납금의 징수 위탁 근거 명확화 ····· 14

※ 참고자료 ····· 19

1. 군인 가사(간호) 휴직 현황(최근 3개년) ····· 19

2. 성 비위사건 징계시효 관련 법 개정 연혁 ····· 19

Ⅰ. 제안경위 및 제출경위

1. 유용원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2200717)

1) 발 의 자 : 유용원의원 등 11인

2) 발 의 일 : 2024. 6. 20.

3) 회 부 일 : 2024. 6. 27.

2. 정부 제출안(의안번호 2201851)

1) 제 출 자 : 정부 제출

2) 제 출 일 : 2024. 7. 12.

3) 회 부 일 : 2024. 7. 15.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유용원의원 대표발의안

현행법에서는 사고나 질병 등으로 장기간의 요양이 필요한 가족을 간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에게 가사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부양하거나 돌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사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또한 동일한 사유로 가사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이 가사상 필요한 경우 적절히 휴직할 수 있도록 휴직 사유에서 국가공무원과 동등한 대우를 받도록 규정함으로써 합리적인 복무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8조제3항제5호 등).

2. 정부 제출안

가사에 대한 걱정 없이 직무에 몰입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가족을 간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휴직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가족을 부양하거나 돌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휴직할 수 있도록 휴직 사유를 확대하고, 군인의 성 비위 근절을 위하여 성폭력, 성매매 및 성희롱 등 사건의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Ⅲ. 검토의견

1. 개요

□ 유용원의원 대표발의안(이하 “유용원의원안”)은 가사휴직의 사유 확대 및 기간 규정을 명확화하려는 것임.

정부제출안은 1) 가사휴직의 사유 확대 및 기간 규정 명확화,

2) 군인의 성 비위사건 징계시효 연장(3년→10년),

3) 명예전역수당 환수금 및 군 가산복무 지원금 반납금의 징수 위탁 근거를 명확화하려는 것임.

이 중 유용원의원안과 정부제출안의 “가사휴직의 사유 확대 및 기간 규정 명확화” 항목은 내용상 관련성이 있으므로 병합하여 검토함.

□ 두 개정안은 가사휴직의 사유 확대 및 기간 규정을 명확화하려는 측면에서는 동일한 내용이나,

차이점으로는 개정안 제49조제3항제4호 단서에서 조부모나 손자녀의 돌봄을 위하여 휴직할 수 있는 경우의 요건에서 유용원의원안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요건으로, 정부제출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정하여 요건의 규정 범위에 차이가 있음.

1. 가사휴직의 사유 확대 및 기간 규정 명확화(안 제48조제3항제5호 및 제49조제3항제4호 단서 신설).

□ 개정안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사고·질병으로 간호가 필요한 경우에만 휴직이 가능하던 것을 돌봄이나 봉양이 필요한 경우까지 가사휴직 사유를 확대하고, 가사휴직 기간을 1년으로 하되, 재직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현 행	유용원의원안	정부제출안
제48조(휴직) ①·② (생 략) ③ 임용권자는 장기복무 장교, 준사관 및 장기복무 부사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와 단기복무 중인 여군 및 제6조제4항 또는 제8항에 따라 전형을 거쳐 복무기간이 연장된 단기복무 장교 또는 단기복무 부사관이 제4호의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업무	제48조(휴직)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제48조(휴직)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현 행	유용원의원안	정부제출안
수행 및 인력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1. ~ 4. (현행과 같음)
5. 사고나 질병 등으로 장기간의 요양이 필요한 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간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만, 조부모 또는 손자녀의 간호를 위하여 휴직할 수 있는 경우는 본인 외에는 간호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	5. 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부양하거나 돌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만, 조부모나 손자녀의 돌봄을 위하여 휴직할 수 있는 경우는 본인 외에 돌볼 사람이 없는 등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	5. 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부양하거나 돌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만, 조부모나 손자녀의 돌봄을 위하여 휴직할 수 있는 경우는 본인 외에 돌볼 사람이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

현 행	유용원의원안	정부제출안
6. (생 략) ④ ~ ⑧ (생 략) 제49조(휴직기간) ①·②(생 략) ③ 제48조제3항 각 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 3. (생 략) 4. 제48조제3항제5호: 1년 이내	6. (현행과 같음) ④ ~ ⑧ (현행과 같음) 제49조(휴직기간) ①·②(현행과 같음) ③ ----------. 1. ~ 3. (현행과 같음) 4. ----------이내. 다만, 재직기간 중 총 3년을 넘을 수 없다.	6. (현행과 같음) ④ ~ ⑧ (현행과 같음) 제49조(휴직기간) ①·②(현행과 같음) ③ ----------. 1. ~ 3. (현행과 같음) 4. ---------- 이내. 다만, 재직기간 중 총 3년을 넘을 수 없다.

□ 현행법 제48조는 "**사고나 질병 등으로** 장기간의 요양이 필요한 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의 부모를 **간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휴직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및 자녀를 간호하기 위한 휴직을 허용하고 있으나, 봉양이나 돌봄을 위한 휴직은 허용하지 아니하고 있음.

개정안은 이러한 현행법 규정을 군인이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봉양이나 돌봄을 위하여**도 휴직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취지임.

□ 최근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핵가족, 소가족화로 고령의 노부모 봉양과 자녀 학교생활 적응 등을 지원할 가족이 없는 경우가 많음[1].

따라서 군인에게도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봉양이나 돌봄을 위한 휴직을 허용하여 일·가정 양립을 확대 지원하고, 가사에 대한 걱정 없이 직무에 몰입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은 타당한 것으로 보임.

□ 또한, 현행법 제49조제3항제4호에서는 가사휴직의 경우 그 기간이 "1년 이내"로만 규정하고 있어 가사휴직 총 기간이 1년 이내인지 아니면 가사휴직 사유별로 1년 이내인지 규정 해석상 명확하지 않는 점이 있음.

따라서 가사휴직 사유별 휴직기간을 1년 이내로 하되, 재직기간 중 총 3년을 넘을 수 없도록 명확하게 규정하는 개정안의 내용은 타당한 것으로 보임.

□ 참고로, 국가공무원, 군무원 모두 개정된 「국가공무원법」[2]을 적용하여 확대된 가사휴직을 사용하고 있는바, 타 공무원과의 형평성 및 입법적 균형 측면에서도 개정의 실익이 있다고 보임.

---

1) (육군 기준) '23년 부모 봉양 및 자녀·배우자 돌봄 등의 사유로 고충장교로 인정된 사례: 87건

2) **제71조(휴직)** ② 임용권자는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면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5. 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부양하거나 돌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만, 조부모나 손자녀의 돌봄을 위하여 휴직할 수 있는 경우는 본인 외에 돌볼 사람이 없는 등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
제72조(휴직 기간) 휴직 기간은 다음과 같다.
8. 제71조제2항제5호에 따른 휴직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직 기간 중 총 3년을 넘을 수 없다.**

□ 다만 유용원의원안과 정부제출안의 차이점에서, 국가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의 하위법령 중 대통령령 외에「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이 있어서 '대통령령등'이라고 규정한 것과 달리, 「군인사법」은 대통령령 외 하위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정부제출안과 같이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해 보임.

2. 군인의 성 비위사건 징계시효 연장(3년→10년)(안 제60조의3제1항 및 제2항)

□ 개정안은 군인의 성 비위 근절을 위하여 성폭력, 성매매 및 성희롱 등 사건의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제60조의3(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의 시효) ① 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제56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이 지났을 때에는 할 수 없다.	제60조의3(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의 시효) ① 징계의결등의 요구는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1. 징계 사유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0년 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지행위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라.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2. 징계 사유가 제56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현 행	개 정 안
	경우: 5년 3. 그 밖의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년
② 징계위원회의 구성, 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그 밖에 절차상의 흠 또는 징계 정도 및 징계부가금의 과다를 이유로 항고심사위원회나 법원에서 징계처분등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을 하였을 때에는 제1항의 기간이 지났거나 그 남은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그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는 다시 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징계의결등----------징계의결등----------.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 현행 「군인사법」에 따르면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流用)의 경우 징계시효는 5년이고, 성폭력, 성매매 및 성희롱 등 성 비위사건의 징계시효는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 또는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등[3]의 징계시효와 동일하게 3년으로 규정하고 있음.[4]

3) **제56조(징계 사유)** 제58조에 따른 징계권자는 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8조의 2에 따른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그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

이와 같이 성 비위사건의 징계시효 규정은 성 비위 사건 특성상 피해자의 2차 피해 우려 등으로 비위사실이 뒤늦게 적발되는 경향이 있어, 징계시효 도과 시 징계처분을 할 수 없는 미비점이 있어 왔음. 이러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성 비위사건의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함으로써 군내 성 비위사건의 경각심 제고 및 근절 효과를 기대하려는 개정안의 입법취지 및 그 내용은 타당한 것으로 보임.

□ 국가공무원과 군무원 역시 각각 「국가공무원법」('21.6.8.)[5], 「군무원인사법」('22.12.13)[6]의 개정을 통해 성 비위사건의 경우 10년의 연장된 징계시효를 적용받고 있는바, 타 공무원과의 형평성 및 입법적 균형 측면에서 개정의 실익이 있다고 보임.

□ 한편, 개정안 제60조의3제2항의 현행법률 문구인 "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은 법 제59조제4항에서 동일한 내용에 대해

---

4) **제60조의3(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의 시효)** ① 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流用)이 징계사유인 경우에는 5년]이 지났을 때에는 할 수 없다.

5) **「국가공무원법」제83조의2 (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의 시효)**
① 징계의결등의 요구는 징계 등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1. 징계 등 사유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0년
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지행위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라.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6) **「군무원인사법」제41조 (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의 시효)**
① 징계의결등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1. 징계사유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0년
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지행위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라.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이하 “징계의결등”이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7], 입법의 미비로 보이며 “징계의결등”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개정안이 타당한 것으로 보임.

7) **제59조(징계의 절차 등)** ④ 징계위원회는 징계권자가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이하 “징계의결등”이라 한다)**을 요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의·의결하여 징계권자와 심의대상자에게 결과를 지체 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징계위원회의 결정으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명예전역수당 환수금 및 군 가산복무 지원금 반납금의 징수 위탁 근거 명확화(안 제53조의2제5항 및 제62조제2항 및 제3항)

□ 개정안은 「국세징수법」에서 '체납처분' 표현을 '강제징수'로 변경한 것을 반영하고, 국방부장관이 명예전역수당 환수금 및 군 가산복무 지원금 반납금의 징수가 사실상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징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명확히 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제53조의2(명예전역) ① ~ ④ (생략) ⑤ 제4항에 따른 환수금을 내야 할 사람이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환수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53조의2(명예전역)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4항에 따라 명예전역수당을 환수하여야 하는 기관의 장은 환수 대상자가 납부기한까지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체납액의 징수가 사실상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징수 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한다.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62조(군 가산복무 지원금의 지급)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라 군 가산복무 지	제62조(군 가산복무 지원금의 지급) ① (현행과 같음) ② ----------

현 행	개 정 안
원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본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선발이 취소되거나 제7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가산복무기간을 복무하지 아니하고 전역 또는 제적된 경우에는 본인이나 연대보증인에게 지급한 군 가산복무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이를 반납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인----------명할 수 있고, 본인이 반납하지 아니할 경우 그의 보증인(「보험업법」에 따라 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한 보험회사를 포함한다)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국세강제징수-----. ----------.
<신 설>	③ 국방부장관은 제2항 본문에 따른 체납액의 징수가 사실상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징수 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한다.
③ (생 략)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 국방부는 인사적체 해소방안의 일환으로 조기전역을 유도하기 위해 장기근속자가 정년 전에 전역하는 경우 전역수당을 지급하는 명예전역제도[8]를 운영하고 있는데,

8) 「군인사법」 제53조의2(명예전역) ① 군인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한 사람이 정년 전에 스스로 명예롭게 전역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명예전역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명예전역수당 환수대상자[9]로는 현역 복무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현역 복무 중에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명예전역수당을 초과하여 지급받거나 지급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급받은 경우 등이 있음.

이에 따라 환수대상자가 명예전역수당 환수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환수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10],

국방부에 따르면 환수대상자가 행방불명된 경우, 구속된 경우 등에는 명예전역수당을 환수하는 데 한계가 있는 실정임.

□ 또한, 군 가산복무 지원금 제도는 대학생 등에게 학자금을 지원하고, 지원금을 지급한 기간(1년~4년)만큼 의무복무기간에 가산하여 복무하도록 하는 제도임.[11]

---

② 제19조제4항에 따라 전역되는 해병대사령관, 제21조제3항 또는 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전역되는 사람으로서 현역정년의 남은 기간이 1년 이상인 사람에 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③ 제8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정년보다 단축된 정년으로 명예전역하는 군인의 명예전역수당에 관하여는 같은 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하여 지급 대상과 지급액을 정한다.

9)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명예전역수당을 지급한 기관의 장은 명예전역수당을 지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명예전역수당을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국가공무원으로 재임용된 경우에는 재임용한 국가기관의 장이 환수하여야 한다.

1. 현역 복무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1의2. 현역 복무 중에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1의3. 현역 복무 중에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2. 경력직공무원이나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3. 명예전역수당을 초과하여 지급받거나 지급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급받은 경우

10) **「군인사법」 제53조의2 (명예전역)** ⑤ 제4항에 따른 환수금을 내야 할 사람이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환수금을 징수할 수 있다.

11) **「군인사법」 제62조(군 가산복무 지원금의 지급)** ① 국방부장관은 우수한 군인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군 가산복무 지원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본인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선발이 취소되거나, 질병 등으로 인하여 가산복무기간을 복무하지 아니하고 전역 또는 제적된 경우 기지급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하도록 되어 있음[12].

지원금 반납의무자가 반납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명예퇴직수당 환수금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반납의무자가 행방불명된 경우, 구속된 경우 등에는 군 가산복무 지원금 반납금을 환수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음.

□ 따라서 개정안은 명예퇴직수당 환수금과 군 가산복무 지원금 반납금의 징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환수금이나 반납금의 징수가 사실상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징수 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징수업무를 위탁하도록 명확히 함으로써 징수업무의 실효성 제고를 추구하는 것으로 그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 한편, 「국세징수법」('20.12.29.)에서는 납세자의 이해도 제고를 위해 의미를 직관적으로 알기 어려운 표현인 '국세체납처분' 표현을 '국세강제징수'로 변경하였는바[13], 개정안에서 「국세징수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것은 타당한 것으로 보임.

학교(기능대학과 학위과정이 설치된 교육기관을 포함한다)의 재학생으로서 장교나 부사관으로 임용되기를 원하는 사람을 선발하여 군 가산복무 지원금을 지급하고 졸업 후 장교나 부사관으로 복무하게 할 수 있다.

12) **「군인사법」 제62조(군 가산복무 지원금의 지급)** ② 제1항에 따라 군 가산복무 지원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본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선발이 취소되거나 제7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가산복무기간을 복무하지 아니하고 전역 또는 제적된 경우에는 본인이나 연대보증인에게 지급한 군 가산복무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이를 반납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3) **「국세징수법」 부칙<법률 제17758호, 2020.12.29.> 제25조(체납처분 용어 변경에 따른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강제징수"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 국방부는 명예전역수당 환수 대상자가 행방불명되거나 구속된 경우 등과 같이 국방부에서 환수금을 징수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효율적이고 정확한 업무처리가 가능하도록 개선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에 동의하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310

※ 참고자료

1. 군인 가사(간호)휴직 현황(최근 3개년)

(단위: 명)

구 분	계	육 군	해 군	해병대	공 군
2023년	35	29	3	·	3
2022년	46	41	3	·	2
2021년	51	45	2	·	4

2. 성 비위사건 징계시효 관련 법 개정 연혁

군인/군무원	◦ 군인사법('89년)/군무원인사법('80년) 징계시효 신설(2년) → '95년 금품비위 연장(2년→3년) → '08년 금품비위 연장(3년→5년) → '14년 일반비위 연장(2년→3년) → '22년 군무원 성비위 연장(3년→10년)
국가공무원	◦ 국가공무원법('73년) 징계시효 신설(2년) → '91년 금품비위 연장(2년→3년) → '09년 금품비위 연장(3년→5년) → '12년 일반비위 연장(2년→3년) → '21년 성비위 연장(3년→10년)